

# 연구비 오남용 사례

= 연구비 제대로 알고 사용하자 =

2012. 4. 12

교육과학기술부  
연구감사팀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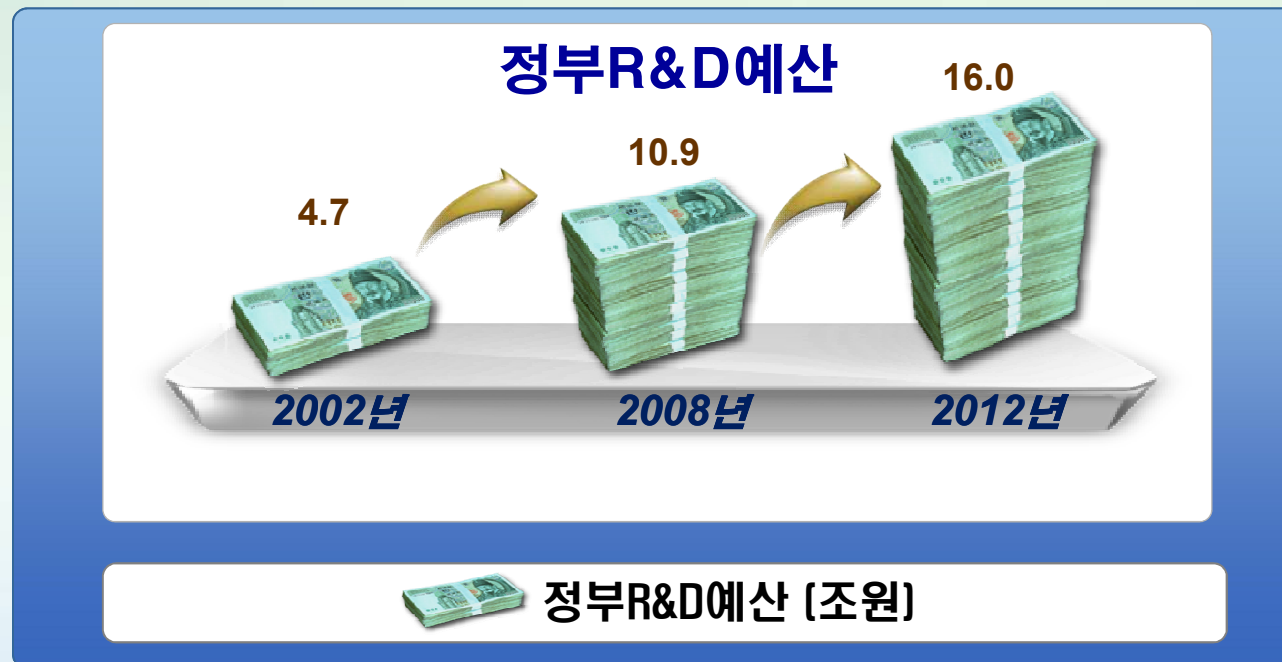
- I 연구비 규모 및 관련제도
- II 연구비 집행관리 현황 및 문제점
- III 연구비 감사의 체계 및 방법
- IV 연구비관리 감사 고려사항
- V 지적사항 및 처분사례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I. 연구 감사의 개요

## 배경

- 매년 정부 R&D 예산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 전략적 관리 필요**
  - 국회, 감사원, 언론 등에서 엄격한 국책연구비 관리시스템 요구



## 관련규정 및 지침

과학  
기술  
행정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제21조(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  
부처  
행정  
규칙

- \*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 지침
- \*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 지침
- \*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 기준 고시

기타

- 연구비 관리 매뉴얼(교과부, 연구재단)
- 자체 연구관리 규정(대학, 연구기관)

# I

## 연구비 규모 및 관련제도

### 연구비 구성항목 및 사용원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에 근거
  -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인건비, 직접비, 위탁연구비, 간접비**

#### ▶ 인건비

- 내부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에게 지급
- 외부인건비 :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는 연구원에게 지급

#### ▶ 직접비

- 장비 및 재료비 : 해당 연구와 관련한 기기, 장비, 기자재, 시약, 재료, 시험분석, 시제품 등
- 연구활동비 : 출장여비, 인쇄, 공공요금, 비품구입, 정보수집, 도서구입, 과제수행관련 식대
- 연구수당 : 과제수행관련 연구책임자 및 참여자의 보상금, 장려금 (**인건비 20%범위**)

# I

## 연구비 규모 및 관련제도

### ▶ 위탁연구비

-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연구비
  - 본 연구과제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를 초과하지 못함

### ▶ 간접비

- 간접비율 고시기관(인건비+직접비), 비 고시기관 (인건비+직접비의 17%)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인건비,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능력성과금
  - 연구지원비 :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등 연구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연

## 연구비 감사 필요성

✓ 연구비 규모가 확대, 연구수행기관의 증대,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원 및 행정인력이 점차 증대함에 따라 연구비 사용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

• 특히 국정감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연구비 사용에 대한 문제점 노출이 점차 증가 하여 연구분야의 신뢰성이 우려

## [국감현장] 출연연 연구비 개인카드 감사 검토

4일 000 연구원에서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 의원은 "xxx연구원의 (연구비 관련)개인카드 지출액이 출연연 중 가장 많은 564건이며 금액은 1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A 의원은 XXX가 도서구입비 1500만원을 개인카드로 결제한 이유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XXX연구원은 "온라인 구매 때 해킹과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신 개인카드를 쓴다"며 "원칙적으로 법인카드를 쓰고 향후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 내지 계좌이체를 이용하도록 관련지침을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A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감사는 진행한 것 맞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교과부 담당자는 "출연연 개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전면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한편 11개 출연연이 지난 1년간 개인카드를 집행한 내역은 모두 8995건에 5억1000여 만원이다.

연구보다 잭밥에 눈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공짜 해외여행·법인카드 무분별 사용·금품 수수 등 도덕적 해이 심각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절한 해외출장 및 법인카드 사용 남발에 토지보상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자문료를 과다 지급하는 등 적절치 못한 기관 운영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법인카드 사용도 도마에 올랐다. DDD연구원의 경우 지난 2008년 법인카드가 51개였지만 올해는 245개로 약 5배 증가했으며, '부서장이나 직원 배우자 생일선물', '수능 자녀 선물'을 비롯한 개인용품도 법인카드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BB연구원은 금품수수, 예산 낭비, 부적절한 사업자 선정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CC일보]

3년간 445억 날린 CCC기관  
예산 3조 집행 ... 관리·감독 부실

올해 5월 K대 지방캠퍼스 사회학과에선 H교수가 책임용 심사위원들에게 제출한 학술지 연구논문이 "심사 없이 학술지에 게재됐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연간 예산이 3조원이 넘는 CCC기관이 각종 연구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술지는 13년 사이에 56종에서 2060종으로 크게 늘었지만, 학술지 운영 실태에 대한 재단의 점검은 지난해 처음 이뤄졌다. CCC기관이 인정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교수들의 승진·재임용은 물론이고, 발주하는 연구비 지원 사업의 핵심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그런데도 관리는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 II

# 연구비 집행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용도의 사용 실태 및 원인 분석

### 1. 연구장비·재료 허위 구입 및 비용 과다계상

-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 및 적정 단가 확인 곤란**
  - 연구자가 납품업체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물품을 허위구입(물품공급 없이 연구비 지급)하거나 비용을 과다 계상하여 리베이트 수수
  - ※ 공무원과 연구자가 공모하여 인건비 및 기자재 허위 청구로 연구비 횡령(10.7.28, YTN 등) 300만원 이하 연구기자재 인수서 허위작성 후 물품대금 횡령(10.7.28, 연합뉴스, YTN 등)

### 2. 학생연구원 인건비 유용

- **일부 연구자의 도덕적 해이로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인건비 재분배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 대학교수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개인용으로 사용 (10.11.10, 조선, 동아, 중앙, MBC 등)

## II

# 연구비 집행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연구비 용도외 사용 실태 및 원인 분석

### 3. 연구비를 기관 운영자금으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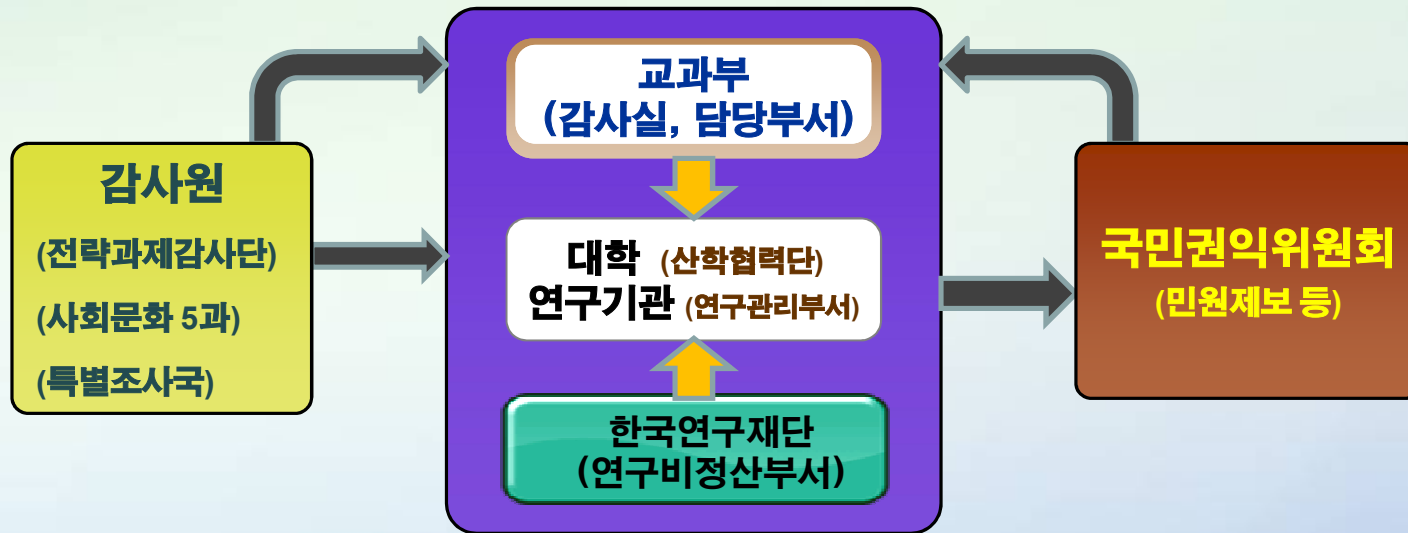
- 자금 운용이 어려운 기관에서 연구비를 무단 인출하여 기관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는 사례 발생

### 4. 인센티브 부적절 또는 과다 지급

- 기관별 합리적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력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나,
  - 일부 출연(연), 대학 외에는 기관별 기준이 미비하고, 일부기관은 간접비 확보 대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과도하게 인센티브를 지급

감사체계

-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교과부 등 주무부처 감사 및 연구재단 정산
  - 감사원에서 교과부, 연구재단, 대학, 연구기관 직접 감사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보 조사 등 실시



## 교과부의 연구비 감사

- 교육과학기술부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감사 실시

**종합감사**

- 대상 : 기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
- 주기 : 3년마다 실시

**부분감사  
(특정감사)**

- 대상 : 필요하다고 판단한 특정과제 및 취약분야에 대해 실시
- 주기 : 수시(기관장, 국회, 감사원 등 외부기관 요청)

**일상감사**

- 대상 : 자체 감사기구가 사전 예방·지도의 목적으로 실시
- 주기 : 연구사업 계약체결 전

## Ⅲ

# 연구비 감사의 체계 및 방법

### 자체감사의 문제점

- 연구비 관리기관의 자체감사는 **인력 부족, 전문성 부족, 감사결과에 대한 미온적 처리 등** 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에 한계**
  - 대학 등 자체감사 기구의 평균 감사인력이 많이 부족
  - 실질적이고 사전 예방차원의 자체감사 요구 증대

### 협동감사의 기대효과

- 충분한 자체감사 인력 확보로 감사 사각지대 해소
- 국가 연구비의 부정행위 사전 예방으로 대 국민 신뢰성 확보
- 자체 감사기구의 직무상 권한 강화 및 내부통제 내실화 기대

**▶ 연구비 관리 및 제도분야**

- **연구비 관리 지침 등 규정 정비 여부**
  - **연구비 중앙관리 관련 규정**
  - **인건비 등 공동관리 금지 규정**
  - **간접비 집행 및 목적 외 사용 금지**
  - **부당 집행시 제재 (참여제한, 연구비 회수 등)**
  - **자체감사의 시기 · 방법 · 절차 등**

## ▶ 연구비 집행분야

- **인건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등 부당 집행**
  - 계약직원 으로 채용한 내부 직원의 인건비를 연구비 외부인건비에서 집행
  - 연구종료 1개월이 남지 않은 기간에 기자재, 장비 등 연구비 집중 사용
  -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고려없이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 배분
- **간접비 부당집행**
  - 간접비를 기관 수입으로 인식하여 주유소, 기념품 등 방만하게 사용
  - 대학 발전기금 출연 등에 활용
- **연구비 중앙관리 위반**
  - 대학교수 · 연구소 명의로 계약체결
  - 대학교수 · 연구소가 연구비 · 연구 수익금을 직접 관리

## 연구비 증양관리 위반사례(1)

## 지적

ooo대학교의 간접비 수익금의 운영·관리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산학협력단”** 이 연구협약을 통해 간접비를 일괄 징수한 후 이를 학교 회계로 전액 전출하여 사용

## 처분

간접경비를 관련법규에 맞게 산학협력단회계에서 연구개발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개선요구**

## 연구비 증양관리 위반사례 (2)

## 지적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장이 증양관리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000대학교의 000 교수가 개인 명의로 연구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비를 교수 개인이 수령하여 직접 관리·집행 하면서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받지 않고 계약서와 다르게 연구비를 집행

## 처분

관련교수 주의촉구

##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1)

## 지적

000대학교의 000 교수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연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인건비, 연구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한 **다는** 명목으로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수령 통장과 카드를 되돌려 받아 랩장(또는 총무)에게 보관토록 하면서 인건비 재분배, 등록금 지원, 실험실 경비 등에 사용하고, 일부 금액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교수와 랩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나머지는 통장에 보관

## 처분

학생인건비 공동 관리를 지시하고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한 **000 교수 중징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경비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교수 및 랩장이 사적으로 사용한 금액과 보관 중인 **금액 회수,**  
**재발방지 통보**

##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2)

## 지적

000대학교의 000 교수가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 2명을 연구계획서에 포함시켜 이들 2명으로 부터 통장, 비밀번호, 카드를 되돌려 받아 지급된 인건비를 인출 한 후 본인과 배우자 계좌에 각각 분산 관리 하면서 이들 2명 학생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급하고, 해외 논문발표 등에 일부를 사용 하였으며, 나머지는 본인계좌에 관리

## 처분

학생인건비를 본인 계좌로 관리해온 000 교수 경징계  
000 교수가 개인계좌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 회수  
재발방지 통보

## 연구논문 관련 부적정(1)

## 지적

OOO연구원 ooo 등 2명은 A 학회지에 논문 심사를 받던 중 B 학회지로 부터 논문 요청을 받고, A 학회지에서 심사 중이던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 통과 후 B 학회지에 게재 하였으며, 이후 심사 중이던 논문도 A 학회지에 심의 통과 되어 게재 함으로써 동일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 하게 됨

## 처분

연구 논문을 이중으로 게재한 연구책임자 및 공동참여자 2명 경고  
타 대학으로 이직한 연구책임자의 기관장에게 통보

## 연구논문 관련 부적정(2)

## 지적

000대학교 ●●●교수는 2005년도 △△△기관의 연구개발결과물로 제출한 논문의 제목을 바꾸어 2007년 ◆◆◆기관의 연구과제로 다시 신청하여 **이중으로 연구비를 수령하고 논문을 제출**하였으며, ◆◆◆기관의 직원 000는 이러한 사실을 운영관리실로 부터 통보 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음

## 처분

000대학교 ●●●교수와 ◆◆◆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직원 000는 **경징계**  
◆◆◆기관 이사장, 과제 처리 실장, 팀장 **경고**  
000대학교 ●●●교수가 연구활동비 및 출장비로 사용한 **금액 회수**  
**재발방지 통보**

## 연구논문 관련 부적정(3)

## 지적

△△△대학 ★★★ 교수 등 13명은 대학에서 함께 학위과정을 했던 후배의 논문을 표절하여 학교 논문집에 제출하고 학교 교수 평가에 실적으로 인정 받는 등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하거나, 본인 기여 없이 이름만 올려 논문집에 제출

## 처분

- 감사원과 합동감사로 감사원 심의절차

## 연구비 목적 외 사용(1)

## 지적

OOO연구원 원장이 해외학회 학술세미나에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에 없이 기관고유사업에서 2년간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출장여비 사용**

## 처분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원장 및 기관고유사업 연구책임자 경고**  
**연구비 목적 외 사용금액 전액 회수**

## 연구비 목적 외 사용(2)

## 지적

000대학교의 41명의 교수가 민간 기업체 초청강의, 학회 이사회, 대학논문 심사, 과제심사 및 선정평가, 자문위원회 등에 **대가를 받고** 참석하면서 본인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여비를 지급받는 등 **연구비를 목적 외에 사용**

## 처분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교수 41명** 주의  
연구비 목적 외 사용금액 **전액 회수**

## 연구비 목적 외 사용(3)

## 지적

000대학교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면서 연구과제책임자 등에게  
자문료, 강의료, 홈페이지 관리수당, 실험참가비, 지도교수 수당 등으로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

## 처분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연구책임자 11명 주의**  
**연구비 목적 외 사용금액 전액 회수**

## 연구비 목적 외 사용(4)

## 지적

OOO연구원 에서는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구입비로 문서세단기, 회의용 테이블, 일반책상, 쇼파, 파티션, 서랍장 등 간접비에서 지출되어야 할 비용을 직접비에서 사용함으로써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

## 처분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기관에 주의

## 연구비 목적 외 사용(5)

## 지적

000연구원 에서는 경상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학생 등록금을 직접비 중 기술정보활동비에서 **연구와 무관하게 사용**

## 처분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기관에 경고**

## 연구수당 부당지급 및 규정미흡(1)

## 지적

OOO연구원에서는 자체 인센티브 규정에 과제별로 연구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하면서도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을 전액 지급받거나, 규정을 이행하지 않고 연구책임자 본인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등 **총 29명이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음**

## 처분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29명 경고**  
부당하게 지급한 연구수당 **전액 회수**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 연구수당 부당지급 및 규정미흡(2)

## 지적

000연구원 에서는 자체 연구수당 관련 규정에 연구책임자가 참여 연구자의 참여율, 기여율 등을 반영하여 공정한 평가를 거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데도 000 연구책임자 등 25명이 **참여율을 무시하고 평가 함**으로써 연구책임자 본인이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지급받음

## 처분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연구책임자 경고**

연구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행정직원 경고**

연구수당 지급시 참여율을 반영하도록 **개선**

## 연구성과관리 미흡(1)

## 지적

000기관의 직원 △△△과 팀장 ●●●은 모 대학 ◇◇◇교수가 수행하여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가 2쪽으로 부실하여 연구결과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도, 연구가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허위 보고**하여 연구비 잔금을 지급

## 처분

허위 보고한 직원 △△△은 **중징계**, 팀장 ●●●은 **경징계**  
연구결과를 부실하게 제출한 ◇◇◇교수는 **경고**  
연구결과 부실에 따른 **연구비 회수 통보**

## 연구성과관리 미흡(2)

## 지적

000대학교 관련 규정에는 교직원이 직무발명을 완성한 때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신고 하도록 되어 있고, 산학협력단장은 이를 **심의회**를 거쳐 학교명의로 특허 출원할 것인지 결정토록 하고 있는데도, 000교수 등 55명의 교수는 신고 및 심의절차 없이 **개인 명의로 특허등록 및 관리**

## 처분

개인명의로 관리하고 있는 **교수 55명 경고**  
등록된 직무발명 특허를 관련규정에 따라 권리확보 절차를 취하도록 **통보**

## 연구성과관리 미흡(3)

## 지적

000대학교는 △△△기업과 기술료 5천만원에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는 매년 1천만원씩 받기로 하였으나 1회 1천만원만 기술료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미납된 상태에서 해당기업에 납입을 독촉하거나 계약해지 등의 **사후관리 소홀**

## 처분

산학협력단장 등 관련자 **주의**

## 연구장비 구매 및 공동활용 미흡(1)

## 지적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특례규칙에서는 구매시 예정가격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000연구원은 연구장비 구매 관련 규정에 구매부서장의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도록 하여 예정가격 없이 **구매 부서장의 추정 가격으로만** 구매절차 수행

## 처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자체규정 **개선요구**

## 연구장비 구매 및 공동활용 미흡(2)

## 지적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3천만원 이상 장비는 NTIS에 등록하여 공동활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000연구원에서는 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이 지연되고, 또 등록된 장비의 경우에도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기관내부활용”**, **“부서단독활용”**, **“협의 후 결정”** 등을 명기 함으로써 공동활용을 어렵게 하고 있음

## 처분

NTIS에 등록하지 않거나 지연된 연구책임자 **경고**  
등록자의 주관적 판단이 아닌 명확한 기준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선요구**

## 간접비 집행 부적정(1)

## 지적

간접비는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성과 활용비 등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어야 하는데도 000대학교 에서는 보직수행 경비를 지급하고 있는 교수에게 **보직수당**으로 지급하거나, 학교 **발전기금**에 부당하게 출연하는 등 목적이나 범위에 맞지 않게 사용

## 처분

간접비를 보직수당으로 집행한 **직원 및 교수 징계**  
간접비를 발전기금에 출연한 **교수 주의**  
발전기금에 출연한 **전액 회수**

## 간접비 집행 부적정(2)

## 지적

000대학교 공과대학 000교수는 본인이 소속된 연구소에 배정된 간접비 중 일부를 본인 집 근처 주유소에서 수차례에 걸쳐 유류대로 사용하는 등 총 5명의 교수가 같은 방법으로 **간접비를 무단 집행**

## 처분

간접비를 무단하게 집행한 **교수 5명 경고**

간접비를 유류대로 사용한 **금액 회수**

재발방지 **통보**

## 간접비 집행 부적정(3)

## 지적

OOO연구원 에서는 기관운영 홍보비에서 집행해야 할 홍보용 넥타이를 연구  
과제와 무관한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에서 부당 집행**

## 처분

연구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담당자에 경고**  
목적외 사용한 **금액 회수**

## 연구계획서 중복사용

## 지적

OOO연구원 관련 규정에는 연구원의 유사 중복연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 부서는 중복여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책임연구원 ◆◆◆는 연구원 자체 과제를 수행하던 중 타 기관에서 유사 연구과제를 공모 하자 기존 계획서를 일부 수정하여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 연구비를 받음

## 처분

과제 책임자 책임연구원 **2명 경징계**  
연구과제 관리부서 및 참여연구원 **13명 주의**

## 국외 연구연가 수행 부적정

## 지적

000연구원 관련 규정에는 연구 연가자는 연가 기관, 기간, 목적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도록 하고, 종료 후 2개월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책임연구원 ▼▼▼는 국외 연가 활동 중 연구원에는 전혀 알리지 않고 총 105일을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가 경비를 수령 하였으며, 또 일부 직원은 연가 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음

## 처분

연가 중 국내 체류자 책임연구원 1명 **경징계, 연수경비 회수**  
보고서 제출하지 않는 연구원 **11명 경고**

## 기타 부당사례

## 사례

- ▶ 사전 사유서 제출 없이 휴일, 밤 23시 이후 연구비 카드 사용
- ▶ 해외 출장 중 연구비 카드로 개인 물품 구매
- ▶ 내부 규정 없이 연구책임자가 연구수당 100% 수령
- ▶ 회의 결과 기록 없이 연구비카드 사용 등

과학기술인 여러분!

국가 연구비를 내 것처럼 아껴 쓰시다.

감사합니다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정부출연기관

### 1. 0000 연구원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연구개발 사업비 목적 외 사용	◎ 기관운영 홍보비에서 구입·활용해야 하는 홍보용 벡타이를 연구비로 구입하는 등 총 6건의 연구비 목적 외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고 : 2명</li> <li>◦ 주의 : 4명</li> <li>◦ 회수 : 646천원</li> </ul>
2. 연구비 카드 운영 관리 미흡	◎ 연구비 카드제 사용관리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선</li> </ul>
3. 고가 연구장비 공동 활용 운영 미흡	◎ 3,000만원 이상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대상을 조사하지 않고, 관련 위원회 미상정 - 현재 공동활용 가능한 장비 총 36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정부출연기관

### 2. 00000 연구원

지적 건 명	지적 내 용	처 분(안)
1. 기관고유사업 편성 및 운영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고유사업 세부과제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없는 총괄과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및 기능적 성격의 명칭인 “정책총괄” 및 “이행총괄” 형태의 대과제 운영</li> </ul> </li> <li>◎ 기관고유사업 결과보고서도 없고, 평가절차도 수행하지 않아 그 성과를 확인할 수 없음에도 연구활동 진흥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08년까지 2개 사업 13,684천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 선</li> <li>◦회 수: 13,684천원</li> </ul>
2. 내부 직원의 원고료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재 제작시 직원들의 원고를 받아 편집하면서 직원들에게 ‘07년과 ‘09년 2차례에 걸쳐 원고료 총 10,203천원 지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 고 : 2명</li> <li>◦통 보</li> </ul>
3. 연구 논문 발표 시 보안성 검토 미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09년까지 3년간 국내발표 24건, 국외발표 7건에 대한 보안관리 부서의 보안성 검토 미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의 : 12명</li> <li>◦개 선</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정부출연기관

### 2. ○○○○ 연구원

지적건명	지적내용	처분(안)
4. 국내출장 여비 지급 부적정	◎ 국내출장 수행과 관련 이종 신청하거나 개인 연가기간을 포함하여 출장을 신청하여 여비 부당 수령(총 4명, 441천원)	◦ 주 의 : 4명 ◦ 회 수 : 441천원
5. 법인카드 용도외 사용 및 출장비 정산 부적정	◎ 주점 등에서 법인카드 용도 외 사용 및 출장시 법인카드 사용 식비(출장비) 미정산 : 총 20명, 4,108천원	◦ 주 의 : 20명 ◦ 회 수 : 4,108천원
6. 내부직원의 강사료 지급 부적정	◎ 자체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방침」 별표2의 원내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집행지침(기획재정부 제정)」에 위배	◦ 통 보
7. 법인카드 및 연구비카드 연체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연구비 카드 104건 29,773원, 법인카드 76건 90,583원 연체료가 발생한 바 카드전표 제출지연 및 이에 대한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통 보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정부출연기관

### 3. ○○○○ 연구원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출장여비 중복 및 외부 강의.회의 등 미신고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용차량 이용자에게 운임 등 여비 과다 지급 - 1,829천원(33명, 73회)</li> <li>◎ 외부강의.회의 등 미신고자 및 출장비 중복 수령 - 1,129천원(11명, 19회)</li> <li>◎ 국외출장여비 중복 수령 : 4,897천원(17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7명</li> <li>◦주의 : 14명</li> <li>◦회수: 7,855천원</li> </ul>
2. 0000 대회 사업비 집행처리 및 운영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7~2009 00대회 시.도 지원금을 시.도 교육청 등에 지원하면서 사업비 집행방법 및 집행잔액과 이자 발생액 등에 대한 처리지침 없이 지원 및 집행결과 미확인 - '07~'09 시.도지원금 : 233,800천원 (07 : 80,200천원, '08 : 81,800천원, '09 : 71,8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11명</li> <li>◦통보</li> </ul>
3. 0000 사업비(출연금)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의 보상금 등 연구개발비에 사용해야하는 00000 사업 중 사업관리 및 기관고유사업비에서 00센터 인테리어공사비 등 지급 (238백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 3명</li> <li>◦통보</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정부출연기관

### 3. ○○○○ 연구원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4. 임직원 능률성과급 지급 부적정	◎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00000사업 중 사업관리 및 기관 고유사업비 (연구수당) 및 간접비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임직원 능률 성과급 지급 - 이사장 3백만원 등 재단 사무관리 임직원 20명에게 총 24백만원 지급	◦경고 : 4명
5. 000인력양성사업비 관리 부적정	◎ 대학 부설영재교육원 지원사업비에서 학술대회 참가자들에게 숙박비 일부 지원 내역을 공지하지 않아 여비 중복 지급 - 2007년~2010년, 7회 9,818천원	◦주의 : 4명
6. 기자재 및 재료비 집행 부적정	◎ 연구기간 종료후 기자재 및 재료비 집행 - 3건, 7,505천원	◦경고 : 2명 ◦회 수 : 7,505천원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지연 보고	◎ 연구비 사용실적은 연구종료 후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되어있는데도, - 수학과학교육사업(출연금) 관련 재단위탁 연구용역 실적 지연 제출(2건)	◦통보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정부출연기관

### 4. ○○○○ 연구원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에 관한 법령준수 부적정	◎ 연구개발비 지급 및 관리 관련 규정이 각각 개정('08.12.31, '09.1.6.) 되었으나, 자체 '연구관리규정', '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요령', '연구관리시스템' 등을 각각 개정 또는 개선하지 않음	◦기관경고
2. 연구개발비 집행 부적정	◎ 시작품제작비는 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비용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하는데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을 위반하여 연구원의 일반용역 사업비를 주요사업과 자체연구사업의 직접비 중 시작품제작비(용역비)로 부당하게 집행	◦주의 : 2명
3. 연구개발비 사용 부적정	◎ 연구책임자 10명은 연구기자재 구입비를 해당 연구과제의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범용 사무기기 및 시설 구입비로 사용	◦기관주의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정부출연기관

### 4. ○○○○ 연구원

지 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4. 내부인건비 참여율 초과 계상 및 연구수당 지급 부적정	<p>◎ 내부인건비는 기관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3년간 총 1,253,323천원 과다 계상 ('07:128%, '08:116%, '09:121%)</p> <p>- 또한, 동 과다 계상액을 기준으로 인건비 연동비목인 연구수당을 산정한 결과 인센티브 산정기준(기본사업의 경우 인건비의 5%)을 초과하여 3년간 연구수당 초과 계상(17,738천원)</p>	<p>◦주의 : 8명</p> <p>◦회수: 17,628천원</p>
5.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p>◎ 연구활동비 중 전문가 활용비 지급과 관련하여 회의록, 전문가 자문 확인서 등 자문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154회에 걸쳐서 53명에게 총 39,800천원의 전문가 자문수당을 부당 집행</p>	<p>◦경고 : 6명</p>
6. 외부인건비 비목 중 효도휴가비 집행 부적정	<p>◎ 외부인건비는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법정수당 및 부담금을 당해 과제 에 계상·처리할 수 있으며, 외부 인건비 비목에 법정수당 외의 수당 (효도휴가비)은 계상할 수 없는데도, '08년부터 '10년까지 3년 동안 계약직 직원에게 423 회에 총 114,210천원의 효도휴가비를 외부인건비에서 부당 하게 집행</p>	<p>◦개선</p>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5. 00000 대학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날짜, 같은 장소, 같은 목적으로 출장을 이중 신청하거나 출장기간이 겹치는 중복 출장에 대해 출장비를 과다 지급</li> <li>- 275명(662회), 30,797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117명</li> <li>◦통보</li> <li>◦회수 : 30,797천원</li> </ul>
2. 교내 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학술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수들은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최장 3년2개월에서 최단 2개월이 경과하도록 연구결과물을 미제출</li> <li>- 과제 지연제출자 18명('05 ~ '08.5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11명</li> <li>◦주의 : 10명</li> <li>◦통보</li> </ul>
3. 연구비 구입 물품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 및 도서를 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고 운용</li> <li>- 물품 242점, 도서 2,623권 등 592,577천원</li> <li>◎ 연구비로 구입한 물품을 이직하면서 무단반출 - 2건 16,98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1명</li> <li>◦시정</li> <li>◦회수: 16,980천원</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5. 00000 대학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4. 직무발명 개인 명의 특허 등록 및 기술이전 심의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 발명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은 채 개인명의 등록 및 출원 : 특허보유 : 8명(12건), 출원중 : 7명(9건)</li> <li>◎ 기술이전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07~'10기간 중 22건 모두를 기술이전 계약 체결 : 이전료 137,100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 16명</li> <li>◦통보</li> </ul>
5.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활동비 중 여비를 집행하면서 기내숙박 등을 확인하지 않고 초과 지급하였고, 해외여행경비를 연구비에서 전액지원하고 있는데도 국제학술대회 참가경비를 지급하는 등 이중 지급(8명, 12,015천원)</li> <li>◎ 연구비에서 전동칫솔 등 개인용도 물품 구입 (2명, 465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5명</li> <li>◦회수 : 10,386천원</li> </ul>
6. 연구비 일시대여금 운용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연도 중 연구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연구비를 입금 받지 못하고 입체금으로 처리한 후 미회수(3건, 26,147천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보</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6. ○○○○ 대학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지적재산권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한 6건의 특허를 개인명의로 등록, 개인명의로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명의 환원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 9명</li> <li>◦시정</li> </ul>
2.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및 연구비 추가 지원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결과 제출기한이 최장 28개월에서 최단 3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연구결과를 미제출(24명)</li> <li>◎ 연구결과 미제출자를 연구자로 선정, 연구비 지원(5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27명</li> <li>◦통보</li> </ul>
3. 우수연구자 선정 연구비 지원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정과 다르게 교내연구비를 선금금으로 지원</li> <li>◎ 우수연구자로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급받고도 연구기간 종료 후 감사일 현재까지 과제지원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5명</li> <li>◦통보</li> <li>◦회수 : 3,000천원</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6. ○○○○ 대학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4. 연구비 중앙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탁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연구진흥지원처 및 산학협력단 에서 나누어 각각 관리</li> <li>- 2007~2009년까지 수행한 35건의 과제를 연구진흥지원처 18건, 산학협력단 17건 관리</li> <li>- 연구비의 중앙총괄 및 산학협력단 관리 원칙을 미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ul>
5. 연구 간접경비 징수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규정의 근거 없이 간접경비를 미징수 하거나, 낮은 징수비율을 적용 처리</li> <li>- 2007~2010년까지의 교내연구과제 중 우수연구자 지원 건에 대해 미징수 (규정 5%)</li> <li>- 교외연구과제 중 컨설팅연구 건에 대해 규정(10%)보다 낮은 5%적용 징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7. 0000 대학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0000 외부 연구과제 집행 부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용역비를 산단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000연구소, 19개 과제, 881,404천원 집행(2006. 2월~2010.4월)</li> </ul> </li> <li>◎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연구원들이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연구비를 사적으로 집행하는 등 허위 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수 000 11,012천원, 연구원 5,091천원</li> </ul> </li> <li>◎ 유류오염사고 피해보상청구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면서 중앙관리를 하지 않은 채, 집행근거 서류 없이 연구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 문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연구비 : 120,317,581원</li> <li>- 증빙자료 없는 지출액 : 118,438,333원</li> <li>- 개인 보관액 : 1,879,248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징계 : 1명</li> <li>◦경징계 : 1명</li> <li>◦경고 : 2명</li> <li>◦주의 : 3명</li> <li>◦수사의뢰</li> <li>◦회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79천원</li> </ul> </li> </ul>
2. 산학협력단 출장여비 중복·과다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여비 중복 및 과다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날짜, 같은 출장지, 같은 목적으로 중복출장을 신청한 후, 기성회회계 및 대외연구비회계에서 출장비를 중복·과다 수령 : 163명, 26,806천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의 : 11명</li> <li>◦통보</li> <li>◦회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806천원</li> </ul> </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7. 0000 대학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3. 연구활동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를 연구목적 외 사적용도로 사용</li> <li>-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개인승용차에 주유</li> </ul> <p>연구책임자 자택근처의 식당 및 주점에서 연구목적과 무관하게 집행하면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연구원(연구보조원)이 참석한 것처럼 허위 회의록을 작성 : 2명, 1,140천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1명</li> <li>◦회수 : 1,140천원</li> <li>◦통보</li> </ul>
4. 연구비 중복 수령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연구 과제로 교내학술연구비와 한국학술진흥재단으로부터 연구비를 중복하여 수령·집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2명</li> <li>◦회수 : 1,015천원</li> </ul>
5. 교내 학술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학술연구과제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교원(28명, 29개 과제)에 대해 '10. 3. 5. 제출기한을 연장하도록 산학 협력단에서 공문 시행</li> <li>- 연구결과물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7명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에도 허가</li> <li>-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하지 않은 교원(21명, 22개 과제)에 대해 연구비 회수 조치기로 결정·통보 후 12명은 연구비를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출기한 재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16명</li> <li>◦주의 : 7명</li> <li>◦회수</li> <li>- 48,562천원</li> <li>◦통보</li> </ul>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8. 00000 대학

지적 건 명	지적 내 용	처 분(안)
1. 연구실적물 관리 부적정	◎ 대학원생 제자의 졸업논문을 요약·정리하여 교내 연구비 2,000천원 수령	◦경징계 : 1명 ◦회수 : 2,000천원 ◦통보
2. 연구비 집행 부적정	◎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비를 사적용도로 사용(총 971천원)	◦경고 : 2명 ◦회수 : 971천원
3. 지적재산권 관리 부적정	◎ 직무발명 사실을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특허 및 상표 출원	◦주의 : 5명 ◦통보
4.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 출장여비 중복 수령, 415천원	◦주의 : 3명 ◦회수 : 415천원

# 참고 : 기관별 연구비감사 지적 사례

## 국립대학

### 9. ○○○○ 대학

지적 건 명	지 적 내 용	처 분(안)
1. 교원 연구촉진 장려금 및 직원 행정개선 지원비 등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성회 회계에서 교원 연구촉진장려금 및 직원 행정개선 연구지원비 명목으로 전체 교직원에게 인건비성 수당 6,130백만원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원 137명 194백만원, 조교 94명 80백만원, 연구원 16명 15백만원</li> </ul> </li> <li>◎ 해외 파견 교원에게 원격교육비를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파견중인 교원 34명 54,944,3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고 : 2명</li> <li>◦주의 : 7명</li> <li>◦통보</li> </ul>
2. 연구비 분리 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연구비를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하여야 하나 산학협력단과 원격교육연구소에서 각각 관리('07~'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협력단 1,667백만원, 원격교육연구소 106백만원</li> <li>- 연구원 연구 참여율 미관리</li> <li>- 537명 중 325명 참여율 미기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보</li> </ul>
3. 교내 연구비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연구결과보고서를 연구 종료 후 최단 1년, 최장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미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내 연구비를 지원받은 교원 4명이 최저 2개월, 최장 1년 8개월 제출기간 경과</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보</li> </ul>
4. 출장여비 중복 및 .과다 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장여비 중복 및 과다 수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같은 날짜, 같은 출장지, 같은 목적으로 중복출장을 신청하거나 출장기간과 장소 가겹쳐지게 출장을 신청하여 출장비를 과다 수령(82명, 2,853,64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보</li> </ul>